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상향함.

라.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지구심의회가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구조금 지급 결정 당시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구심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지급의 총 기간은 48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분할 지급할 1회의 금액은 분할 지급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지구심의회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던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조피해자”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6회”를 “2회”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40개월”을 “48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개월”
을 “3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4개월”을 “28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개월분”을 “48개월분”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호 중 “40개월”을 “4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6개월”
을 “4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2개월”을 “3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8개월”을 “3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4개월”을
“2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0개월”을 “2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6개월”을 “20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2개월”을 “14
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8개월”을 “10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1
0호 중 “4개월”을 “5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3개월”을 “4개월”
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40개월분”을 “48개월분”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구조금 지급”을 “구조금 지급·분할 지급”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 중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를 “(구조결정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한

다)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 또는 확정된 약식명령문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29조의2제5항 및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과기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 6. (생략)

<신설>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8. · 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지구심의회가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구조 피해자나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구조금 지급 결정 당시 구조 피해자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구심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지급의 총 기간은 48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분할 지급할 1회의 금액은 분할 지급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지구심의회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던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

<u>제16조 · 제17조</u> (생략)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u>구조피해자</u>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u>6회</u>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생략)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	<u>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u> <u>제17조 · 제17조의2</u>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 <u>구조피해자나 그 유족</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 ----- <u>2회</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 ----- -----
---	---

A set of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eight horizontal dashed lines. A single dotted lowercase letter 'd' is positioned on the second line from the top, intended for tracing practice.

- 48개월
- 38개월
- 28개월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

----- . -----

----- 48개월분 -----

----- . -----

1. -- 48개월
2. -- 44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3. -- 38개월

4. -- 34개월

5. -- 28개월

6. -- 24개월

7. -- 20개월

8. -- 14개월

9. -- 10개월

10. --- 5개월

11. ----- 4개월

12. ----- 3개월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 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제26조(지구심의회회의 기능) 지구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48개월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지구심의회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5. (생략)

제27조(지구심의회 구성) ①·
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
다.

1. ~ 3. (생략)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

5. (생략)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
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
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
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

-----.

1.·2. (현행과 같음)

3. ----- 구조금
지급·분할 지급 ---

4.·5. (현행과 같음)

제27조(지구심의회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함 -----

--

5. (현행과 같음)

제36조(구조결정 등에 필요한 조
사 및 증명절차) ① -----

-- 한다)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지구
심의회 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9조의3
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
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
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다
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 또는
확정된 약식명령문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
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29조의2제5항 및 법 제
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에 관
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6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구조과	
연 락 처	(02) 2110 - 3868